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손해배상 입법 대응* **

Recent Trends of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and Domestic Legislative Response

조인성***
Cho, In-Sung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에 따른 국내법적 대응조치
- III. 맺는 말

국문초록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 규범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추가의정서의 입법은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으로 사후규제에 해당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로써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동법은 이 추가의

논문접수일 : 2014.07.01

심사완료일 : 2014.08.04

게재확정일 : 2014.08.05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고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유럽헌법학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2014년 3월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책임과 구제에 관한 아시아 법제 통합방안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입법 대응을 중심으로 -"를 수정·보완하여 기고한 글이다.

*** 법학박사·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서에 따른 책임구제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실과 입증책임의 분배도 어려우므로, 민법체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배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 곤란하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는 이 생물체의 특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손해가 이 생물체의 또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손해가 특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생물체의 취급자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생물체와 취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환경복구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장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주제어 : 유전자변형생물체, 책임구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민사 책임, 재정보증, 유전공학법

1. 들어가는 말

올해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라 한다) 당사국총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¹⁾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 등 국가간 이동, 취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당사국총회는 의정서에 서명한 회원국들이 모여 의정서 이행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의정서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회의이다. 올해 2월 의정서의 당사국은 165개국과 유럽연합²⁾이다.

이번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가이드스 채택여부와 의정서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개념 마련 등이다. 사회경제적 고려는 LMO의 수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위해성평가에 따른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LMO의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선 채택하겠다는 것이다.³⁾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⁴⁾'(이하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라 한다)에 대한 가입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으며 이번 당사국총회 기간 중 또는 2014년 말까지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도 발효가능성이 있어 총회개최국으로서 유럽, 일본 등 주요국 동향을 파악해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안을 마련하고 추가의정서 가입여부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기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추가의정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착수가 필요할 것

1)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9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CPB) 제7차 당사국총회(MOP7)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한 특별전문가그룹 사전회의를 올해 2월 17일부터 닷새간 서울 을지로5가 라마다서울동대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직 개념 및 구체적 적용 범위 등이 불명확해 이번 사전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 9월 MOP7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특별전문가그룹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국(25명)과 비당사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5명)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1709314387982&outlink=1>.

2) 아프리카 49개국, 아시아·태평양 44개국, 중남미·카리브해 30개국, 중앙·동유럽 22개국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21개국.

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97047>.

4) 박기주,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과정과 향후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17집 제2호, 2011. 12, 14면 이하 참조.

이다.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LMO에 인한 피해의 책임구제에 관한 의정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당사국총회 개최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 총괄부처인 환경부와 함께 당사국 총회 개최도시를 선정하고 준비위원회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12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LMO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상업용으로 재배 중인 LMO는 없으며 옥수수, 대두 등 식품 사료용 LMO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LMO 수입규모는 2012년 약 784만톤이며 주로 미국에서 수입(81%)하고 있다.⁵⁾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⁶⁾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추가의정서로써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⁷⁾에서 채택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발효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가의정서는 LMO가 국가간 이동함으로써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구제를 위해 당사국이 대응조치하는 국제절차 규칙을 정하고 있다.

올해 제7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총회개최 이전에 선도적으로 추가의정서 비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국내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규율내용이 상호충돌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높은 현실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써 LMO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동법은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따른 책임구제에 관한 규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LMO의 특성, 즉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실과 입증책임의 분배도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민법체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용하여 LMO로 인한 피해보상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곤란하다.

5) 2013 바이오안전성백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11, 256면.

6) 2003년 9월 11일 발효되고, 165개국과 유럽연합이 본 의정서의 당사국임.

7) 더 많은 정보는 <http://bch.cbd.int/protocol/supplementary/>에서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 준비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LMO법을 개정하여 추가의정서 내용을 국내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으나, 타 법률이나 다른 국제법규에 따른 피해구제 수준 및 방법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율간 중복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깊은 국제법규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국내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비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 이 추가의정서에 비준 가입한 국가는 EU를 포함한 20개국이다. 이 추가의정서 제18조에 따르면 40개국이 비준 가입 후 90일 채 되는 날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추가의정서에 비준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추가의정서는 2013년 12월 9일에 헝가리가 2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그 발효를 위해서는 이제 반 바퀴를 막 돌고 있는 셈이다. 아래 목록은 상기 20개국의 서명일 및 비준 가입에 대한 최신 통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⁸⁾

#	국 가	서명일	비준가입일	발효일
1	Albania		Jan 29, 2013	
2	Bulgaria	May 11, 2011	Dec 06, 2012	
3	Burkina Faso		Oct 04, 2013	
4	Cambodia		Aug 30, 2013	
5	Czech Republic	May 11, 2011	Feb 13, 2012	
6	European Union	May 11, 2011	Mar 21, 2013	
7	Germany	Sep 20, 2011	Aug 27, 2013	
8	Guinea-Bissau	Feb 01, 2012	Sep 24, 2013	
9	Hungary	May 11, 2011	Dec 09, 2013	
10	Ireland	May 11, 2011	Jan 14, 2013	
11	Latvia	May 11, 2011	Nov 30, 2011	
12	Lithuania	May 11, 2011	Dec 06, 2012	
13	Luxembourg	May 11, 2011	May 14, 2013	
14	Mexico	Mar 05, 2012	Sep 26, 2012	
15	Mongolia	Jan 26, 2012	May 21, 2013	
16	Norway		Nov 01, 2012	
17	Romania	May 11, 2011	Oct 04, 2013	

8) <http://bch.cbd.int/protocol/parties/#tab=1>.

18	Spain	Jul 21, 2011	Dec 04, 2012	
19	Sweden	Mar 07, 2011	Oct 12, 2012	
20	Syrian Arab Republic		Nov 05, 2012	

이런 문제 의식에서, 본고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인과관계, 민사책임, 재정보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 추가의정서가 손해배상책임 요건의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국내 이행입법의 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각계전문가 및 국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체계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II.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에 따른 국내법적 대응조치

1. 서 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법적 대응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추가의정서의 내용에 따라 (1) 국가간 이동한 LMO에 의하여 발생한 인적손해 및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배상책임 및 복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국내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2) 발생가능한 인적손해 및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적절조치와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법적규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LMO법 개정안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LMO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LMO작업의 사업자와 LMO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⁹⁾

LMO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LMO작업의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리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불법행위 책임에서 증명책임부담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LMO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가해자측의 과책을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전공학방법을 통해 유전물질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LMO손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이외에 위험책임의 법리도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¹⁰⁾

2. 손해배상책임규정의 법률상 위치

유전공학에 있어서 책임법은 법적 규율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제도, 예컨대 안전조치 및 집행의 통제에 대한 안전법과 함께 규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전공학에 있어서 책임법은 유전공학의 위험에 대한 예방기능보다 피해에 대한 보호기능이 크므로 반사이익적이며, 개별적인 반면, 안전법은 예방적이며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책임법은 안전법과 나란히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전공학의 위험에 대한 예방기능을 수행한다.¹¹⁾ 그러므로 유전공학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법의 직접적 예방과 책임법의 간접적 예방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LMO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안전관리',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9) 문상혁, "LMO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 나고야 책임규제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5권 제2호, 생명의료법연구소, 2011. 12, 179면; 강봉석, "유전공학에서의 손해배상책임", 『환경법연구』, 제24권 제1호, 환경법학회, 2002, 261면.

10) 문상혁, 전제논문, 179면; 강봉석, 전제논문, 261-262면.

11) 정진명, "유전공학과 민사책임",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2000), 276면.

LMO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동 법률의 내용 체계상 제2장의2에서 "배상책임"이라는 장명 아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공학육성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 및 책임에 관한 조항 없음	제1장 총 칙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u>제2장의2 배상책임</u>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독일유전공학법¹²⁾은 제7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유전공학법¹³⁾은 제12장 113조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스위스유전공학법¹⁴⁾은 제7장 38조로 체계화되어 있다.

독일유전공학법	오스트리아유전공학법	스위스유전공학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유전공학시설에서의 유전공학 작업 제3장 환경배출 및 유통	제1장 총 칙 제2장 폐쇄된 시스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작업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방출과	제1장 총 칙 제2장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취급 제3장 집 행

- 12) 독일유전공학법(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Gentechnikgesetz, BGBl. I S. 2066)은 1993년 12월 16일 제정되었고, 2013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BGBl. I S. 3154).
- 13) 오스트리아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 BGBl. Nr. 510/1994)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물실험법개정법률(Tierversuchsrechtsänderungsgesetzes)을 수용한 개정법률(BGBl. I Nr. 114/2012)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4) 스위스에서의 "인체외에서의 유전공학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Gentechnik im Ausserhumanbereich, Gentechnikgesetz, BBl 2000 2391)은 2003년 3월 3월 21일 제정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장 공동규정 제5장 책임규정 제6장 벌칙, 과태료규정 제7장 경과, 최종규정	생산물의 유통 제4장 인간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유전자치료 제4장a 민사책임 제5장 유전공학위원회, 유전공학백서 제6장 행정청의 관할, 통제 제7장 안전성 연구 제8장 임시적 강제조치 제9장 권리의 소멸 제10장 자료 및 자료유통의 신뢰성 제11장 국제적 정보교환 제12장 경과, 벌칙, 최종규정	제4장 법적 의무 제5장 책임 제6장 형법규정 제7장 최종규정
---	--	---

3.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1) 개설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 과실책임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책임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달려 있으며,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은 현재의 학문과 기술수준으로는 확실하게 예방하고 회피할 수 없는 개발위험이 본래적이며, 전통적인 과실책임은 이 위험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⁵⁾ 즉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에 대하여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전보는 불충분하므로 위험책임도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위험책임도입은 예외가 아니라 과실책임에 대한 함축성 있는 보충이라 할 수 있다.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책임범의 개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책임은 단순한 인과책임에 가까운 원인야기자 책임 내지 시설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행위

15) 정진명, 전계논문, 277면; 강봉석, 전계논문, 263면.

자책임이 있으며,¹⁶⁾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유전공학작업의 위험에 대하여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책임의 구성요건에는 예컨대 “불가항력”, “불가피한 사건” 또는 당해 사업장의 “정상적 상태”와 같은 수많은 유보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공학법은 “차별화된 위험책임”, 즉 현재의 학문과 기술수준으로 인간과 환경에 대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위험책임은 행위의 허용성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위험으로 간주되는 유전공학작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전공학책임은 환경책임의 경우처럼 시설책임이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책임이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시설책임은 단지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산업체의 생산과정만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유전공학 작업의 본질적인 위험영역을 간과할 수 있고, 또한 LMO를 방출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시설로서 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공학 작업에 대한 위험책임은 유전공학작업을 전제로 한 행위책임이며, 유전공학작업의 특수한 위험의 실현이 책임의 근거로 된다.¹⁷⁾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는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원자력손해배상법을 들 수 있다.

(2)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유전공학법

독일 유전공학법 제32조(책임) 제1항은 “유전공학작업에 기인하는 생명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되거나 또는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유전공학법 제79조a(인적손해와 물적손해) 제1항 제1문은 “LMO의 작업 또는 그 방출시에 유전적변형으로 생긴 생명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되거나 또는 유체물이 훼손된 경우에

16) Bruggemeier, *Deliktsrecht*, 1986, Rn. 31.

17) 정진명, 전계논문, 278면.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9조b(환경침해) 제1문은 “유체물에 대한 손해가 본질적인 환경침해이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책임있는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 비용이 훼손된 물건의 가치를 초과한 때에만 피해자에게 회복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유전공학작업에 의한 환경침해의 경우에도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 유전공학법 제30조(원칙) 제1항은 “허가 또는 통지의무 있는 자로서 폐쇄된 시스템에서 LMO작업을 하고, 그러한 생명체를 의도적으로 방출하거나 또는 그것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는 이러한 작업시에 유전물질의 변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31조(환경침해) 제1항은 “LMO작업에 책임이 있는 자는 파괴되거나 훼손된 환경의 요소를 회복하거나 그것을 동일한 가치의 요소로 대체하는데 드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전공학작업에 의한 환경침해의 경우에도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3) 검토

결론적으로 유전공학책임은 유전공학작업으로 인하여 위험원으로서 손해를 야기하는 특성을 가진 LMO가 존재하고, 이러한 생명체를 방출하거나 유통하였다는 것이 책임법적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 위험책임의 채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무과실책임이라는 용어는 민사책임법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과실책임이라는 용어가 배상책임의 근거가 가해자의 과실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무과실책임이라는 표현은 배상책임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따라서 LMO에 의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성질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위험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배상책임의 성질을 적시할 필요가 없이 ‘배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

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제조물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민법에서 유일한 무과실책임인 제758조의 책임을 '공작물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책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험책임'이라는 명칭이 해당 책임의 성질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줄 것으로 생각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유전공학은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전공학 작업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공학작업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적합한 책임규정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며, 유전공학작업의 허용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¹⁸⁾ 즉 유전공학작업의 허용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은 효과적인 책임규정과 그와 결부된 예방효과에 의하여 막을 수 있지만, 모든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행위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책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는 제조물책임법과 원자력손해배상법가 각각 제조업자와 원자력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1)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유전공학법

독일 유전공학법 제32조(책임) 제1항은 사업자를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전공학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유전공학작업 또는 방출을 실행하거나 또는 LMO를 포함하거나 그것으로 구성된 생산물을 처음으로 유통시킨 법인, 자연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

18) 이러한 의미에서 유전공학사업자의 유책사유 없는 책임은 증가된 위험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대가(Preis)라고 한다(Luttermann, "Gentechnik und zivilrechtliches Haftungssystem", JZ 1998, S.179).

단”을 말한다(제3조 7호). 그리고 제32조 제2항은 “수인의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배상의무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배상할 의무와 급부할 배상의 범위는 일방 또는 상대방이 손해를 어느 정도로 현저하게 야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민법 제421조 내지 제425조 및 제426조 제1항 2문과 제2항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유전공학법 제79조의a(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제1항은 사업자를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전공학시설을 운영하거나 LMO작업 또는 방출을 실행한 자연인, 법인, 상법상의 인적회사 또는 영리회사”를 말한다(제4조 18호).

(2) 시사점 및 개정안

결론적으로 유전공학책임을 위험책임으로 규정하는 경우 위험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책임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누구를 사업자로 정할 것인지는 유전공학의 특성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입법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유전공학법은 Betreiber와 Projektleiter, Beauftragter für die Biologische Sicherheit를 구별하고 (동법 제3조 제7호, 제8호 및 제9호), Betreiber를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전공학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유전공학작업 또는 방출을 실시하거나, LMO가 포함된 또는 그로 구성된 생산물을 최초로 유통시킨 법인, 자연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좁게 정의하고, 유통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소지자만을 Betreiber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동법 제3조 제7호),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Operator”를 LMO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적절하게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 자를 말하며, 특히 허가소지자, LMO를 유통시킨 자, 개발자, 생산자, 신고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반자 또는 공급자 등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추가의정서 제2조 제2항 C호 참조).

생각건대 국제적 이동에 따른 LMO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자”에게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자 또는 공급자 등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각각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위험에 대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책임주체를 LMO “취급자”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LMO의 “취급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조(정의)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를 취급자로 본다.”

5. 손해배상책임요건

(1) 개 설

위험책임의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은 ① LMO의 특성, ② 손해, ③ LMO의 특성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로 파악된다.

① LMO의 특성: 법률은 현대적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융합의 방법으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제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손 해: 손해배상법상 손해란 “법질서가 보호하는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의 침해로 발생한 불이익”을 말하며, 이는 다시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로 구분된다. 인적손해는 재산손해와 비재산손해(정신적 손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물적손해는 통상 재산적손해로만 파악된다. 재산적 손해라 함은 문제된 침

해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 상태와 침해가 발생한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과 그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2000)의 취지에 따라 2010년에 채택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LMO방출로 말미암아 그 특성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생물다양성의 복원 등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고 (추가의정서 제2조 제2항 d호), 이러한 대응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LMO취급자가 최종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추가의정서 제5조 제5항).

그러나 이러한 환경복원비용은 전통적인 물적손해 내지 재산손해 개념으로 항상 포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환경복원비용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물적손해는 피해 부동산 시가로 산정되며, 환경피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 폭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산손해가 부정되거나 가격하락 폭만큼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LMO취급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범위에 환경복원비용을 포함시키려면, 이에 관한 별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유전공학법 제32조 제7항 참조).

③ 인과관계: 피해자가 LMO특성, 즉 인위적 유전자재조합 내지 세포융합으로 인하여 발현된 LMO성질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통상 피해자에게 이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특정한 LMO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이 경우 해당 LMO취급자가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당해 손해가 해당 생물체의 유전자변형에 의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생물체의 자연적인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유전공학법

독일 유전공학법 제34조(원인추정) 제1항은 “손해가 LMO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 그 손해는 유전공학작업에 근거한 생명체의 특성을 통하여 야기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하고, 제2항은 “추정은 손해가 이 생명체의 다른 특성에 기인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깨진다.”고 하여 제한된 인과관계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지 LMO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유전공학작업에 의하여 변형된 생명체의 특성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입증책임만 인과관계추정의 형태로 완화되므로, 손해가 LMO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LMO와 손해 간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손해가 LMO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완전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오스트리아 유전공학법 제79조의d(입증경감)는 “제79조의a에 따라 행위의 대상인 LMO가 개별적 사안의 사정에 따라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손해는 유전자변형에 의하여 생긴 특성의 결과로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그 손해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79조의a 제2항의 의미에서 공동으로 야기되었다고 개연성 있게 밝힌 경우에 그 추정은 반증된다.”고 하여 제한된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유전공학법 제33조(입증경감) 제1항은 “원인 연관성의 입증은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러한 입증이 확신될 수 없거나 입증을 부담하는 자에게 입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현저한 개연성으로 만족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이외에는 사안을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개정안

서술내용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제27조의2(위험책임)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이 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방출로 인하여 환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의 평가 및 적절한 복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인과관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손해가 그 생물체의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상책임한도

(1)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유전공학법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이나 민법상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은 배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보유자의 위험책임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배상책임한도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가입액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다. 독법계에 속하는 스위스 유전공학법은 배상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동법 제30조 이하 참조), 오스트리아 유전공학법도 배상한도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LMO의 위해성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액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9조의j 제1항 참조).

독일 유전공학법 제33조가 배상책임한도액¹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은 과실책임과 달리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배상책임한도액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책임의 경우에는 통상 책임보험가입이 요청되는바, 이 책임보험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 손해배상법의 관점에서는 법질서가 보호하는 타인권리 내지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는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이 동일하므로 위험책임에 대해서만 특별취급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재보험 등 보험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배상책임한도액이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책임보험성립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므로(예컨대 제조물책임보험),

19) 제33조(책임최고액) “유전공학 작업에 기인하는 생명체의 특성의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제32조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8천5백만 유로의 최고액까지 배상책임이 있다. 동일한 사건에 근거하여 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이 제1문의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개의 배상액은 그 전체금액과 최고액과의 비례에 따라 감액된다.”

굳이 독일 유전공학법의 예에 따라 배상책임액한도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2) 검토 및 개정안

생각건대 배상한도액을 규정할 경우 동일사고로 복수 인적·물적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배상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피해자구제가 미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환경복원비용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성립을 위하여 일정한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배상한도액을 설정하면 이는 외국에서 수입한 LMO의 방출로 우리나라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배상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7조의4(환경복구비용)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비용의 내용과 배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정보청구권

유전공학사고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유전공학작업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유전공학작업 내지 유전공학변화의 종류의 범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추정은 제한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결정과 효과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실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평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해당 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유전공학법

독일 유전공학법 제35조는 사업자와 해당관청에 대한 피해자 등의 정보청구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유전공학법 제79조의f 및 제79조의g는 피해자 등의 정보청구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스위스 유전공학법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스위스유전공학법 제30조 이하 참조).

(2)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청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7조의5(정보청구권) ① 손해가 특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취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의 청구를 받은 취급자는 청구자의 이익과 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 등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정보제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취급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다른 취급자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의 확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취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8. 손해배상보장(재정보증)의 개정안

만약 배상의무자가 지급능력이 없으면 위험책임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피해자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유전공학작업에 기인하는 일정한 법익에 대한 손해배상에서의 위험책입의 도입은 청구권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담보를 위하여서는 독일 유전공학법 제36조를 참고하여 일정한 유전공학의도를 가진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담보제공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실질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7조의6 (손해배상보장)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가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환경복구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장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II. 맺는 말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Bráulio Ferreira de Souza Dias는 헝가리가 20번째 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그 발효를 위해서 이제 반 바퀴를 지난 셈이라는 최근 뉴스를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²⁰⁾.

“헝가리가 20번째로 비준한 것은 추가의정서를 가능한 빨리 발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한 많은 정부들의 노력을 확인한 진일

20) <http://www.cbd.int/doc/press/2013/pr-2013-12-17-bs-en.pdf>.

보한 증거라고 본다. 나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그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아직 비준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꾸준히 연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월 현재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아직 서명까지만 하고 비준가입만 남겨둔 33개국은 조만간 비준가입함으로써 책임구제 추가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 비준서를 기탁한 EU 소속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2014년에는 본격적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올해 9월 즈음에는 가입국이 40개국을 상회하여 국제적으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 제7차 당사국총회까지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가 국제적으로 발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 추가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기반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행정적 대응체제 구축,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체계 구축 및 이해당사자 이견조정 등 기반구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도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보다는 나고야의정서(ABS: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발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제1차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당사국총회(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는 제8차 당사국총회와 연계될 전망이다.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LMO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법체계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성립시킨 것이다. 따라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LMO 손해배상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했고 대부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입법이 국내 법현실이나 LMO에 대한 공공인식(Public Understanding)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가입 현황 검토 및 가입 촉구 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LMO법을 개정하여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내용을 국내법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고되는 바, 타 법률이나 다른 국제법규에 따른 피해구제수준

및 방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율 중복 또는 충돌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깊은 국제법규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법 연구와 국내법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써 현재 LMO법이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동법은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따른 책임구제에 관한 규율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LMO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 범위의 한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실과 입증책임분배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민법체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용하여 LMO로 인한 피해보상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LMO법 내에 해당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법조문과 그 개정사유에 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는 이 생물체의 특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손해가 이 생물체의 또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손해가 특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생물체의 취급자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생물체와 취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환경복구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장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봉석, “유전공학에서의 손해배상책임”, 『환경법연구』 제24권 제1호, 환경법학회, 2002.
- 문상혁, “LMO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 나고야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5권 제2호, 생명의료법연구소, 2011.
- 박기주,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과정과 향후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17집 제2호, 2011.
- 정진명, “유전공학과 민사책임”,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바이오안전성백서』, 2013.
- Bruggemeier, *Deliktsrecht*, 1986.
- Luttermann, “Gentechnik und zivilrechtliches Haftungssystem”, *JZ* 1998.

[Abstract]

Recent Trends of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and Domestic Legislative Response

Cho, In-Sung

Prof. Dr.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Hannam

Ist der Schaden durch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verursacht worden, so wird vermutet, daß er durch Eigenschaften dieser Organismen verursacht wurde, die auf gentechnischen Arbeiten beruhen. Die Vermutung ist entkräftet, wenn es wahrscheinlich ist, daß der Schaden auf anderen Eigenschaften dieser Organismen beruht.

Das Besondere der Kausal-Vermutungshaftung liegt darin, daß die eigentliche Haftungsschwelle, nämlich der Beweis der Kausalität, erleichtert wird. Diese Erleichterung ist ohnehin durch die Möglichkeit des Anscheinsbeweises gegeben, wird aber hier noch kraft Gesetzes gesteigert. Trotz der in GenTG gesetzlichen Überschrift "Ursachenvermutung" sind darin doch ganz unterschiedliche Regelungen erfolgt. Das hängt damit zusammen, daß das Haftungsrisiko entweder eng definiert ist oder sich in einem relativ breiten Rahmen hält.

Nach GenTG ist schon Voraussetzung des Eintretens der Vermutung, daß "der Schaden durch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verursacht worden" ist. Die Vermutung ist hier also eine beschränkte: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m Organismus, der Verletzung und dem Schaden muß, sei es auch nur anscheinungsweise, dargetan sein. Dann wird vermutet, daß Verletzung und Schaden auf gentechnischen Arbeiten beruhen, also im Zurechnungszusammenhang stehen.

Auch hier ist grundsätzlich der Gegenbeweis gegeben. Allerdings bedarf es nicht des Vollbeweises, denn die Vermutung ist schon entkräftet, wenn es wahrscheinlich ist, daß der Schaden auf anderen Eigenschaften dieser Organismen beruht, GenTG.

Key words : Living Modified Organisms(LMO), Liability and redress,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civil liability, financial security, GenTG